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

전문공보관 박승환

전화 02-530-4780 / 팩스 02-536-5410

## 보도자료

2022. 12. 5.(월)

제 목

### 중견 건설사 대표의 조세포탈·횡령·배임 등 사건 수사결과

#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-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(부장검사 민경호)는, 건설사 A의 전 대표이사(실경영자) 甲과 회계팀 이사 乙에 대한 조세포탈 등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,
  - 甲이 乙과 공모하여, ① 자녀들에 대한 편법증여와 사주일가의 사익추구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·계획적으로 A 회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법인세포탈 ② 위와 같이 조성한 자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횡령·배임·종합소득세포탈·증여세포탈 등을 저지른 범행 전모를 규명하여,
  - 甲, 乙, A 회사를 각 불구속 기소함
  - ※ 조세포탈 합계 **137억 원**, 횡령배임 합계 **419억 원**
- '22. 7. 4. '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' 개정으로 당청 조세범죄조사부가 복원(구 형사13부)된 후 검찰이 직접 수사한 첫 조세범죄 사건으로,
  - ① '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조세평등을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조세포탈 뿐만 아니라, ② 조세포탈 과정에서 조성한 자금의 흐름까지 면밀히 수사하여 횡령·배임 등을 통해 위 자금이 주로 자녀들에 대한 편법증여와 사주일가의 사익추구에 사용된 사실까지 밝혀,
  - 조세포탈을 통해 기업을 사유화한 종합형 기업범죄의 전모를 규명함

# 1

## 피고인

- 甲 (49세, 건설사 A 전 대표이사{실경영자}, 개인사업체 B, 계열회사인 C 회사, D 회사 등 운영)
  - ※ 범행 당시 甲의 자녀들은 미성년자이고, 위 C 회사는 자녀들이 지배주주(85% 지분)임
- 乙 (52세, 건설사 A 회계팀 이사)
- A 회사 (건설사, '01. 설립)

# 2

## 공소사실 요지 ※ 주요 범행구조도는 별첨 참조

### 1. 조세포탈 (甲, 乙 공모, A 회사는 법인세포탈만 해당)

- '10. ~ '17. 비용을 부풀리거나 수익을 숨기는 방법으로 A 회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법인세 33.2억원 포탈 【**특가범위반(조세)**】
- '16. ~ '18. 위와 같은 방법으로 A 회사와 B 업체의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甲의 종합소득세 84.8억원 포탈 【**특가범위반(조세)**】
- '16. 수십억원 상당의 D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0원으로 평가한 후 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증여세 19억원 포탈 【**특가범위반(조세)**】

### 2. 횡령, 배임, 사문서변조 등 (甲, 乙 공모, 사문서변조 등은 乙만 해당)

- '14. 2. ~ '15. 2. 비용을 부풀리거나 수익을 숨겨 마련한 A 회사의 자금 합계 171억원 사적 유용(C 회사에 사업자금지원, 사주일가의 개인채무변제 등) 【**특경범위반(횡령)**】

※ C 회사는 위 사업자금지원을 받은 분양사업 등에서 1천억원 상당 매출

- ① '07. ~ '15. 9. A 회사의 수익을 숨긴 후 甲(B 업체)이 공사비로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여 A 회사에 130억원 손해, ② '15. 3. C 회사에 A 회사 등의 자금 881억원을 무담보·무이자로 대여하여 A 회사에 액수불상(약 83억원)의 손해, ③ '16. 11. 여동생에 A 회사 소유 토지를 저가로 매도하여 A 회사에 35억원 손해 【**특경범위반(배임)**】

※ C 회사는 위 ② 대여금으로 1천억원 상당 건물 인수(현재 4천억원 상당 평가)

- '16. 11. 여동생에 A 회사 소유 토지 저가매도 목적으로 사문서인 통장 사본 변조 및 이를 세무공무원에 제출하여 행사 【**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**】

### 3

## 수사 경과

- '19. 9. 고발서(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) 접수
- '20. 4.~7. 고발인 조사 등
  - ※ '20. 2. '조세범죄조사부'에서 '형사13부'로 변경,  
'22. 7. '조세범죄조사부'로 복원(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)
- '22. 8.~11. 계좌추적, 압수수색,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
  - ※ 추가 혐의 인지(증여세포탈, 횡령, 배임, 사문서변조 등)
- '22. 11. 17. 甲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(11. 23. 기각)
  - ※ 기각 사유 : 혐의 소명되고 범죄중대성 인정되나, 장기간 수사로 증거 대부분 수집된 점, 주거 일정한 점 등에 비추어 도주 등 구속필요성 인정 어려움
- '22. 12. 5. 甲, 乙, A 회사 각 불구속 기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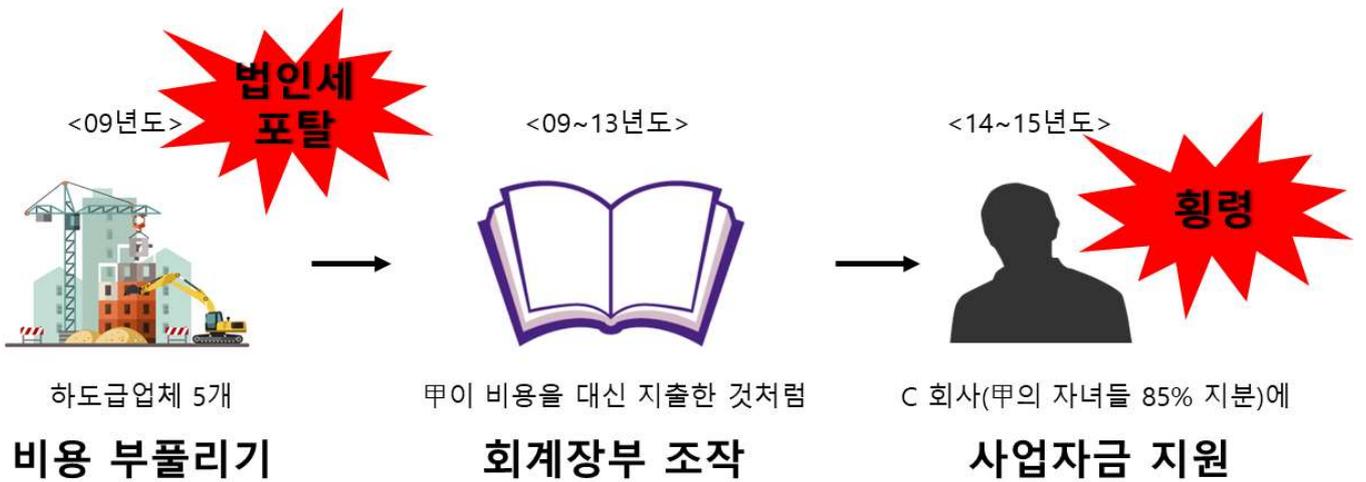
### 4

##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

- (사건의 성격) 이 사건은 사주일가가 십수년에 걸쳐 운영하였던 여러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,
  - ❶ 회계장부 조작 등을 통해 법인세·종합소득세·증여세 등을 포탈하여 국가의 재정을 고갈시키고
  - ❷ 위와 같은 조세포탈 과정에서 조성한 자금 등으로, ▲자녀들 회사인 C 회사에 사업자금을 지원하거나 무담보·무이자로 대여하거나, ▲甲 자신이 채무면제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주일가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, 자녀들 또는 사주일가에게 세금납부 없이 부를 편법으로 이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A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안으로
  - ❸ 최근 우리 사회의 문제점인 편법승계 또는 편법증여 목적의 조세포탈·횡령·배임 등을 통한 기업의 사유화 현상이 집약된 이른바 '종합형 기업범죄'에 해당함

- **(수사의 의의)** 이 사건은 '19. 9. 국세청의 최초 고발 후 검찰의 조세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사가 지체되던 중,
  - '22. 7. 4. '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' 개정으로 당청 조세범죄조사부가 복원 (구 형사13부)된 직후 검찰이 다시 직접 수사한 첫 조세범죄 사건으로,
  - 조세범죄 직접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을 일선 배치하여 조세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고,
  - 국세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재구축하여 조세범죄 대응능력을 제고함으로써,
  - 조세포탈 범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횡령·배임 등의 범죄 (조세포탈 범죄의 동기 또는 결과)까지 추가로 밝혀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함
- **(향후 계획)**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 조세범죄 및 관련 기업범죄에 대하여 계속 엄정히 수사해나갈 예정임
  - ※ 법원에서도, 조세포탈은 '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조세평등을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'이고 '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'로 봄(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366 판결, 같은 법원 2012고합678 판결 등)

[주요 범행구조도 1 - 법인세포탈 및 횡령]



[주요 범행구조도 2 - 종합소득세포탈 및 배임]

